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2. 9. 13.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02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2. 9. 11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조례명 중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함
-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각 2인을, 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으로 구성함. (제3조제1항)
-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제3조제2항)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회는 사장의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제5조)
-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 (제8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법률 제6665호, 2002. 3. 25)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629호, 2002. 6. 19)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지방공사의 사장 후보추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함. (안 제6조)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공단 (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서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가 사장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1999. 8. 6 조례 제2509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장(이하 "공사의 장"이라 한다)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개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서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p> <p>제5조(위원의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li> <li>2.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li> </ol> <p>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p> <p>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의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p> <p>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p> <p>제8조(공사의 장 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p>	<p>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2인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제9조(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p>제9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p>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 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56조의3(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 9. 11.

제안자 : 장준호 의원의

### 1. 수정이유

지방공사사장 후보추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함. (안 제6조)

##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제5조 (생략)</p> <p>제6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u> 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제11조 (생략)</p>	<p>제1조~제5조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u>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u> 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제11조 (개정안과 같음)</p>